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엘림복지타운 운영규정 제2장 입소자 보호관리

제5조(입소대상자) ①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시설입소 대상자로 하되, 입소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소정원 및 직원배치기준.모집방법)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49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 시설의 직원은 시설장1, 사무국장(사회복지사)1, 간호조무사2, 물리치료사1, 요양보호사20(입소자2.5명당1), 21(입소자2.3명당1), 위생원1, 영양사1, 조리원2, 기타 필요(가산 등)에 의한 직원을 둔다.

③ 모집방법(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전단지 광고 또는 지인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절차)

1.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법령,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입소에 의해 입소하여야 하며 시설 입소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장의 입소.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상기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 할수

없다. 다만, 시설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하다.

3. 시설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한다.
4. 장기요양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기간)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1.2.3.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입소계약서 제5조, 제15조에 의한 사항으로의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비용)

1. 시설 입소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법령 등에 의하고, 비급여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시설 비급여(식사, 간식 재료비)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요양원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또는 보호자)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을 통하여 명기한다.)
4.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합의에 의한 입소 이용료로 산정한다.

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후 1개월 간 변경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2.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전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에 변경하도록 한다.

⑦ (계약해지)

1. 시설의 계약해제

-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2)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3)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 6) 장기간의 부재로 이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 된 것으로 한다.
- 2) 입소자는 전항이 계약 해제 일까지 과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 3)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사실을 알게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 된 것으로 한다.
- 4)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사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제8조(시설표준서비스 제공 및 그 비용의 부담)

- ① 시설입소자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시설 입소자 표준 서비스 제공지침에 따른다.
- ②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선용 프로그램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수 있는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요구 할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수 있는 권리
- 11.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이용을 요구 할수 있는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6.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7.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약 등을 제공할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 8.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 하여야 하며,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